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문화체육과-32960
등록일자	2015.12.3.
결재일자	2015.12.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영상물관리팀장	문화체육과장	복지문화국장		
신채경	최종현	이호현	전결 12/03 김효길		
협조자					

- 겨울철 안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-

## 2015년 다중이용업소 시설안전 지도점검 계획

□ 추진기간 : 2015. 12. 3.(목) ~ 12. 22.(화) 20일간

□ 관리대상 :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총 466개소

구 분	총시설수	노래 연습장	게임제공업소					비디오물 사형제공업 (멀티방 등)
			소계	PC방	청소년 게임제공업	복합유통 게임제공업	일반게임 제공업	
총대상	466	304	130	115	6	8	1	32
방문점검 (취약시설)	31	16	9	8	1	0	0	6

※ 영화상영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2015년 11월 안전점검 별도 실시하여 제외함

□ 점검방법

- 안전점검표에 따른 영업자(시설관리자)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
- 단, 영업장면적 100㎡이하인 소규모 시설로서, 같은 사업자가 장기간(5년 이상 계속)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시설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소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

□ 주요 점검사항 :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

- 정기적인(분기별 1회)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
-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관리상태
-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등 관리상태
- 비상구 관리상태, 피난안내도 설치,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

강 남 구  
( 문화 체육 과 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, 제14조 • 2015년 겨울철 재난대비 '노래연습장 및 PC방'안전관리 추진계획 (2015.11.30.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-12835)
<b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안전 발생 사전 차단
<b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검토 후 적시하였음
<b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구 주민 및 해당 시설 이용자 등
<b>분야 별 검토사항</b> [계속 : ] [신규 : 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O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O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O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
<b>타 기관 사 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25개 자치구 추진
<b>전문가 자 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- 겨울철 안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-

# 2015년 다중이용업소 시설안전 지도점검 계획

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강남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 추진목표

-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사전대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
- 다중이용업소 시설관리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

## II 추진개요

- 관련근거**
  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
  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규칙 제13조, 제14조
  - 2015년 겨울철 재난대비 ‘노래연습장 및 PC방’ 안전관리 추진계획 (2015.11.30.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-12835)
- 추진기간 : 2015. 12. 3.(목) ~ 12. 22.(화) 20일간**
- 관리대상 :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총 466개소**

구분	합계	노래 연습장	게임제공업소					비디오물 사채제공업 (멀티방 등)
			소계	PC방	청소년 게임제공업	복합유통 게임제공업	일반게임 제공업	
총대상	466	304	130	115	6	8	1	32
방문점검 (취약시설)	31	16	9	8	1	0	0	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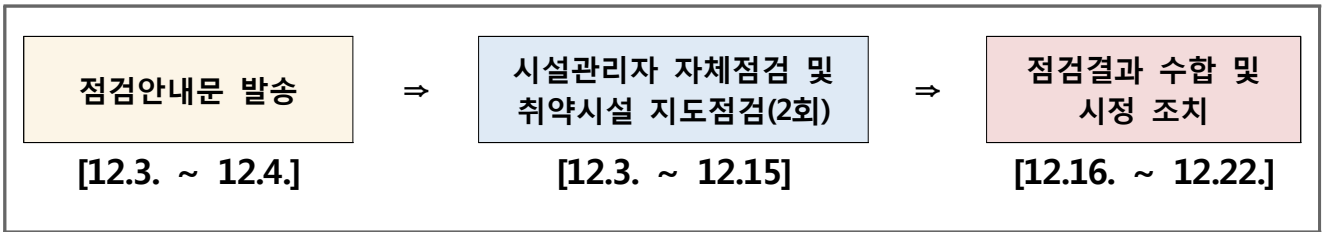
※ 영화상영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2015년 11월 별도 안전점검 실시하여 제외함

## III 점검방법

- 안전점검표에 따른 영업자(시설관리자)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
- 단, 영업장면적 100㎡이하인 소규모 시설로서, 같은 사업자가 장기간(5년 이상 계속)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시설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소 현장 지도점검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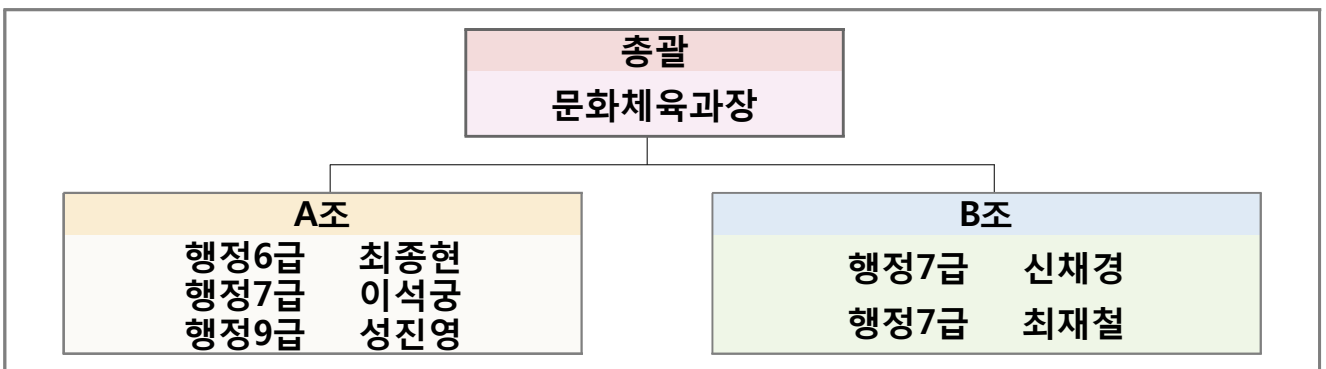
### III 세부추진계획

□ 추진일정 : 2015. 12. 3.(목) ~ 12. 22.(화) 20일간



□ 점검반 구성 점검 및 업종별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

○ 점검반 구성 : 2개조 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실시



○ 점검결과 업종별 사후관리책임자 지정관리

- 노래연습장, 비디오물시청제공업 : 행정7급 신채경, 행정7급 최재철
- PC방 등 게임제공업 : 행정7급 이석궁, 행정9급 성진영

○ 점검방법

-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표 제출
- 영업장면적 100㎡이하인 시설로서, 같은 사업자가 장기간(5년 이상 계속)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 자체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

○ 점검방법별 대상현황

구분	합계	노래 연습장	게임제공업소				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(멀티방 등)
			소계	PC방	청소년 게임제공업	복합유통 게임제공업	일반게임 제공업	
총대상	466	304	130	115	6	8	1	32
영업자 자체점검	435	288	121	107	5	8	1	26
방문점검 (취약시설)	31	16	9	8	1	0	0	6

※ 영화상영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2015년 11월 별도 안전점검 실시하여 제외함

□ **주요점검사항 :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**

-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점검(현장 지도점검 시)
- 정기적인(분기별 1회)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
-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등 관리상태
-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 등 관리상태 점검 등
  -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점검
- 비상구 관리상태, 피난안내도 설치,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

□ **점검결과 조치**

- 경미사항과 비상통로 적치물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
- 유관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기능상, 안전상 위험요인은 시설 관리자 등에게 문서통보
- 위험요인 시정 불이행 시설 관련기관 통보 및 관리

**IV 행정사항**

- **점검 안내문 발송 : 영업장 등기 및 일반우편 중복 발송**
- **점검결과 시정조치 등 업종별 사후관리책임자 지속관리**

- 별첨**
- 1. 관련 법규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**
  - 2.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**

**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**

**제13조 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)**

-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·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등 관련 시설·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(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)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주기, 점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**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**

**제13조 (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)**

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.

**제14조 (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 등)**

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주기,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안전점검 대상 :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
- 2.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)
  - 나.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소방기술사·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  - 다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
- 3. 점검주기 :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. 다만,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4. 점검방법 :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·관리 상태를 점검한다.

##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

### 1. 점검대상

시설명(상호)		업종	
소재지		시설전화번호 (대표 휴대폰)	
건물구조	대표자		소방안전관리자

### 2. 점검사항

점검내용	점검결과	조치사항
<p>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</li> <li>-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계이지 지시침 확인</li> </ul> <p>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, 음향경보 확인</li> <li>- 헤드의 누수·변형·손상·장애 등 확인</li> </ul> <p>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, 표시등, 수신기 확인</li> <li>-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, 발신기, 수신기 확인</li> <li>-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</li> </ul> <p>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도등·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</li> <li>-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</li> <li>-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</li> <li>- 피난기구(완강기, 피난사다리 등) 설치상태 확인</li> </ul> <p>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</p> <p>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</li> </ul> <p>⑦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(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)</li> </ul> <p>⑧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</p> <p>⑨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</p> <p>⑩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</p> <p>⑪ 실내장식물·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커튼, 카펫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</li> <li>- 합판·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</li> <li>-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</li> </ul> <p>⑫ 방염 소파·의자 사용 여부 확인</p> <p>⑬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</p> <p>⑭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(금연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)</p>		

점검일자 : 2015. 12. .      점검자 : (서명)

